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8가단523589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도

담당변호사 박수복

변론 종결2019. 10. 22.

판결 선고2019. 12. 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5,995,673원 및 그 중 155,273,279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1. 26.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1,464,092원 및 그 중 100,741,698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부터 1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6. 체결한 증여계약 및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2, 1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25,871,237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5,871,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를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 B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부터 1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6. 체결한 증여계약 및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2, 1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43,935,996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43,736,4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 B(아래에서 두 피고를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인정사실

갑 7-1~1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은 피고 C과, ① 2018. 3.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부터 11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7. 피고 C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8. 3. 2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12, 1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29. 피고 C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1. 22. D은행과 E은행에 합계 155,273,279원을 대위변제하고 법적절차비용 중 722,394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피고들에 대해 주문 제1항 기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비록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는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2018. 9. 28.경 D은행과 E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의 이자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이미 피고 B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등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피고 B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유무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 C의 선의 여부 가) 피고 C은 피고 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다만 이혼신고를 미루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증여의 형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을 8-1,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A와 B의 자산과 재무상태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 C 스스로도 피고 B의 사업실패 후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각종 독촉장이 수시로 송달되어 오자 피고 B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전부터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과 범위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부터 12까지의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주요 내용과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 명세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①	2006. 8. 23.	F단체	204,000,000원	2018. 4. 4.	원금 170,000,000원, 이자 199,528원
②	2008. 10. 6.	F단체	120,000,000원	2018. 4. 4.	원금 100,000,000원, 이자 325,260원

①	2006. 8. 23.	F단체	204,000,000원	2018. 4. 4.	원금 170,000,000원, 이자 199,528원
③	2014. 8. 22.	주식회사 E	120,000,000원	2018. 4. 5.	원금 59,326,655원, 이자 95,296원
④	2016. 9. 21.	주식회사 E	120,000,000원	2018. 4. 5.	원금 82,739,700원, 이자 147,253원, 수수료 505,391원
합계	413,339,083원				

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가까운 2018. 3. 15.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39,210,320원이다.

[인정근거] 갑 7-1~13의 각 기재, D은행과 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439,210,320원에서 실제의 피담보채권액 413,339,083원을 공제한 나머지 25,871,237원의 한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3)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등을 위하여 E은행과 D은행에 추가로 변제한 총 37,909,903원을 가액배상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5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주장하는 추가변제금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5,871,237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5,871,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김도현

별지